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1151 |
|----------|------|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99.10.2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02. 1. 1일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의회에 상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안 제2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하는 것으로 하였고
- 안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일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고

- 안 제4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였음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1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5,026백만원(추정액)

□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입법예고 : 2003. 5. 1. ~ 5.26. (20일간)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검토보고(방침결정)
- 표준조례안(행정자치부)

20(부록) | 2017주기별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 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관리) ①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 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중 일부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

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 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록) 51
(당일주석)

제6조 (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안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 | | 도 시 과 |
|-------------|----------------|------------------|
| 임 안 자 | 실·과장 직위·성명 | 도시과장 이태운 |
| | 담당·팀장 직위·성명 | 도시계획담당 이승인 |
| | 담당자 성명·전화 | 이태주 (행정 2372) |